

보전산지 해제 고시

양평군 고시 제2016 - 55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·협의·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5 월 9일

양 평 군 수

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구분도의 번호	구역의 표시
경기	양평	용두094	NJ52-9-14-094	준보전산지
경기	양평	양수048	NJ52-9-13-048	준보전산지
경기	양평	양수078	NJ52-9-13-078	준보전산지
경기	양평	양수078	NJ52-9-13-078	준보전산지
경기	양평	양수078	NJ52-9-13-078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 : 관계 도·서는 양평군 산림과 산림공원팀(031-770-2444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